예금자보호제도란?

-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,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
☑ 예금자보호안내문을 확인하셨나요?
☑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?

예금보험관계 표시·설명·확인제도

- 예금보험관계 표시·설명·확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,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,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보호금융상품을 한눈에 확인하세요!

- 보호금융상품에는 예금자보호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

예금보험공사
보호금융상품
1인당 최고 1억원

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

- 공사 홈페이지에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!
http://www.kdic.or.kr
(홈페이지 - 제도·정책 - 보호대상 - 금융상품 -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)

▲ QR코드로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검색해보세요.

테이프 안쪽 붙이는 곳

테이프 안쪽 붙이는 곳

테이프 안쪽 붙이는 곳

예금보호한도

-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.
-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*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.
  * 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
-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.
- 보험계약의 사고보험금은 1억원까지 별도 보호합니다.
-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,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편입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은 합산하여 1억원까지 별도 보호합니다.
- 연금저축(신탁·보험)은 1억원까지 별도 보호합니다.

보호대상 금융회사

-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, 보험회사,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, 저축은행입니다.
-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·수협은행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.
- 농·수협 지역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.
- P2P사, 가상자산사업자, 선불업자 및 유사수신업자 등은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.

ដែនកំណត់ការការារប្រាក់បញ្ញើ

- ប្រាក់ដើម និងការប្រាក់ដែលបានកំណត់ 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ហួសពី KRW 100 លាន ក្នុងមនុស្សម្នាក់ ក្នុងមធ្យោបាយ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។
- ការប្រាក់ដែលបានកំណត់សង់ដៅលើជនទីកប្រាក់កិបដាង រាងការប្រាក់ដែលបានចុះកិច្ចសន្យា និងការប្រាក់ដែលកំណត់ដោយ KDIC។
  * កំណត់ដោយពិចារណាលើអត្រាការប្រាក់រយៈមធ្យមនៃប្រាក់បញ្ញើរយៈពេល 1 ឆ្នាំ ឬលើកកំណត់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សមមូលដែលផ្តល់ដោយស្ថាប័ន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ធានាប់រង។
- កិច្ចសន្យាធានាប់រង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ហួសពី KRW 100 លា នសម្រាប់អ្នកកាន់ប័ណ្ណធានាប់រង សម្រាប់ជនម្នាក់ៗ ក្នុងមធ្យោបាយ២ យ៉ាងគឺ ឬ្រប្រាក់ធានាប់រង ការលាងកាត់ និងការទូទាត់ផ្សេងទៀត។
- អត្រាប្រយោនន៍ធានាប់រងអ្នកកាន់ក្រាមកិច្ចសន្យាធានាប់រង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 ដាច់ដោយឡែកពីហួសពី KRW 100 លាន។
- ក្នុងចំណោមបណ្ណកាណ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ដែលត្រូវសម្រេចញ្ញលនៅក្នុងដែនការកិតកាទដែលបានកំណត់ (DC) ដែនការសោធនធនិវត្តន៍ប្តូលុយ (IRP) និងមូលនិធិសោធនធនិវត្តន៍សម្រាប់សហគ្រាសធ្វើដំណើរ (SME) ទាំងដែលត្រូវបានន់ណើរការដោយលើកលលើក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ដែលការពារដោយប្រាក់បញ្ញើ 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ដាច់ដោយឡែកហួសពីសរុប KRW 100 លាន។
- ប្រាក់សន្សំសោធនធនិវត្តន៍ (ប្រធនបាណកិច្ច/ការធានាប់រង) 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ដាច់ដោយឡែកហួសពីសរុប KRW 100 លាន។

ស្ថាប័ន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ដែល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

- ស្ថាប័ន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ដែល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រួមមានធនាគារ ក្រុមហ៊ុនធានាប់រង ឈ្មួញវិនិយោគ ឈ្មួញកណ្តាលវិនិយោគ និងធនាគារសន្សំ។
- សាខាក្នុងស្រុករបស់ធនាគារបរទេស ធនាគារ Nonghyup Bank និងធនាគារ Suhyup Bank ត្រូវបានប់ញ្ញលថាជាស្ថាប័ន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ដែល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ដូចគ្នានេះ។
- សហការណ៍ក្នុងកំបន់ Nonghyup/Suhyup សហធីកណាទាន សហការណ៍ឥណទានសហគមន៍ (KFCC) និងកាវ៉ាណយ៉ាយ(ប្រៃសណីយ៍) 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ដោយប្រាក់ឥណ្ណនរបស់ពួកគេក្រោមច្បាប់ដាច់ដោយឡែក។
- ក្រុមហ៊ុន P2P ប្រតិបត្តិការទ្រព្យសកម្មនិម្មិត ប្រតិបត្តិការបង់ប្រាក់ជាមួន និងប្រតិបត្តិការទូទាត់ប្រាក់ហ្ស៊ីលនៅក្នុងតំណាងនៅ ១ មិនត្រូវបានចាត់ម្នាក់ជាស្ថាប័នហិរញ្ញវត្ថុដែលត្រូវបានការារនោះទេ។

보호금융상품 & 비보호 금융상품

구분	보호금융상품	비보호금융상품
은행	· 보통예금, 기업자유예금, 별단예금,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· 정기예금, 저축예금, 주택청약예금,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· 정기적금, 주택청약부금,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· 외화예금 ·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·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·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·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	· 양도성예금증서(CD), 환매조건부채권(RP) · 금융투자상품(수익증권, 뮤추얼펀드, MMF 등) · 은행 발행채권 · 주택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등[1] ·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·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· 개발신탁
투자매매업자 · 투자중개업자	·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· 자기신용대주담보금, 신용거래융자담보보증금,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전액 ·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·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·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· 증권금융결제기금[2]의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	· 금융투자상품(수익증권, 뮤추얼펀드, MMF 등) · 장외파생상품, 파생결합증권, 유통금융대주담보금 · 환매조건부채권(RP) · 금전신탁계약체결금 등 ·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· 원화정기예금, 보험계약대출(LS), 주기연계파생결합사채(ELB), 주식워런트증권(ELW) ·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(CMA) · 증권사 발행채권 ·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77조의 8에 따른 증권금융회사(사에 예치되어 있는 금전 ·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증권금융회사(사에 예치되어 있는 금전 · 증권금융투자사업자(조합원제) 발행어음
보험회사	·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· 퇴직보험 · 변액보험계약 특약 ·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·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·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·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·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·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·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	·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· 퇴직보험계약, 재형저축계약 · 변액보험계약 중 계약자지시사망보험금·최저연금적립금·최저중도인출금·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) 등 ·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
종합금융회사	· 발행어음, 표지어음, 어음관리계좌(CMA) 등	· 금융투자상품(수익증권, 뮤추얼펀드, MMF 등) · 환매조건부채권(RP), 양도성예금증서(CD), 기업어음(CP), 종금사 발행채권 등
저축은행	·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신용부금, 표지어음 ·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[2] ·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·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	· 저축은행 발행채권(후순위채권 등) 등 ·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

ចំណាំ: 1) ទារកណ ស្ថានីយ៍ទូរទស្សន៍ ១ ២ ២ ២